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대신증권㈜ 일본(동경)현지법인

2. 제재조치일 : 2025.6.18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투자조언업 영위 필요

본 「금융상품거래법」*상 투자조언업자**는 금융상품거래업 등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고, 3개월 이상 그 업무를 휴지하면 아니 된다.

* 우리나라의 「자본시장법」과 유사한 일본의 자본시장 기본법
** 우리나라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하게 투자자문계약에 의거 유가증권, 금융상품 등의 가치 및 투자판단에 관해 조언

하지만, 대신증권㈜는 2020.5.20. 일본 동경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022.12.16. 투자조언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검사종료일까지 투자조언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바* 투자조언업 등록유지요건 충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영위할 필요가 있다.

* 대신증권㈜ 동경 현지법인은 현재 대신증권㈜·B㈜ 등 C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반 컨설팅 서비스(일본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 등)만을 제공

(관련부서 : 전략지원실)